세미나자료 2023-04

2023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아동 권리 보장과 학대 예방

2023. 7. 5.(수). 10:00~13:00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주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PROGRAM

- 일 시: 2023. 7. 5.(수). 10:00~13:00
- 장 소: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 일 정

▌사회자: **김은영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 실장**(육아정책연구소)

시 간	내 용	
10:00~10:1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개회사 **박상희 소장**(육아정책연구소)	
〈Session 1〉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		
10:10~10:30	발표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와 과제: 셰어런팅을 중심으로** **김아름 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10:30~11:00	토론	**김형모 교수**(경기대학교) **배건이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Session 2〉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11:00~11:20	발표	**영아유기 실태 및 과제** **김자연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
11:20~11:50	토론	**이승미 교수**(서울대학교병원) **한은희 부연구위원**(한국사회보장정보원)
11:50~12:00	질의응답 및 폐회	
12:00~13:00	점심식사	

CONTENTS

개회사 1

박상희 소장 (육아정책연구소)

Session 1.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와 실태

발 표 –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와 과제: 셰어런팅을 중심으로 3

김아름 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토론1 –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와 과제: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문1 ·· 23

김형모 교수 (경기대학교)

토론2 –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와 과제: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문2 ··· 29

배건이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Session 2.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발 표 – 영아유기 실태 및 과제 35

김자연 부연구위원 (육아정책연구소)

토론1 – 영아 유기: 의료적 접근을 통한 예방 59

이승미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토론2 – '영아유기 실태 및 과제' 토론문 65

한은희 부연구위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개 회 사



박상희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장 박상희입니다. 2023년 제2차 육아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영아 유기 등의 사건 보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의 인권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또한 갈수록 활발해지는 온라인 정보 공유 활동으로 인해 온라인상에서의 아동 권리 보호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아동 권리 보장과 학대 예방"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존재만으로도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온라인상에서의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연구와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 가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셰어런팅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를 통해 정보가 온라인에 공유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동향과 과제를 프랑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매우 취약한 영아 시기에는 유기라는 학대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영아 유기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현 실태를 파악하고 어떠한 제도적 보완과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할지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발제를 통해 연구 내용을 공유해 주실 우리 연구소의 김아름 박사님과 김자연 박사님, 토론을 위해 참석하신 경기대 김형모 교수님,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박사님, 서울대학교 병원 이승미 교수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은희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아주신 김은영 실장님과 심포지엄 준비로 애쓰신 김지현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권리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해 많은 고견을 나누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7월 5일

육아정책연구소장 **박 상 희**

Session 1
발표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와 과제: 셰어런팅을 중심으로

김 아 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와 과제: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표순서

1. 들어가며
2. 프랑스 입법 동향
3. OPEN 프랑스 부모 조사
4. CNIL 여론조사
5. 나오며

1. 들어가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최근에는 아동의 온라인상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부모가 SNS에 자녀의 사진을 올리거나 자녀와의 일상생활 등
자녀의 정보를 공유하는 셰어런팅(Sharenting)이 문제되고 있음

➢ 공유를 뜻하는 영어단어 '셰어'(Share)와 양육을 뜻하는 '페어런팅'(parenting)의 합성어

◆ 자녀 공개(셰어런팅, Sharenting)에 대한 올바른 보호수칙을 담은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정 신설(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 5. 발표)
: 아동·청소년 자녀가 있는 학부모와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신청 받아 총 10회(1,000여 명) 실시

➢ 가정과 학교에서 자녀 공개(셰어런팅) 시 유의할 개인정보 보호 실천수칙

➢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보장 방법 등이 사례와 함께 교육 내용에 포함

1. 들어가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7월「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 후속조치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2022.7.제정)" 마련

◆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서비스 시작(2023. 4. 24)

✓ 신청자격: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글·사진·영상 등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

✓ 지원내용 : 해당 게시물의 접근배제(블라인드) 또는 검색목록 배제 등 신청·상담

* 지원대상 : ('23년) 자기게시물 → ('24년 이후(법적근거 마련 후)) 자기게시물+제3자게시물

1. 들어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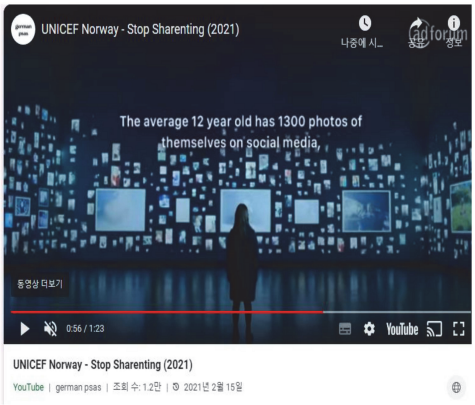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우리나라에서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SNS 에 올리는 것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

➢ 그러나 아동 인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해외에서는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셰어런팅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유니세프 노르웨이위원회 "**스탑 셰어런팅(Stop Sharenting)**" 캠페인

➢ 부모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기 전에 자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게시하기 전 자녀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생각해야 하고, 자녀의 사진이 온라인에 배포될 시 사진 수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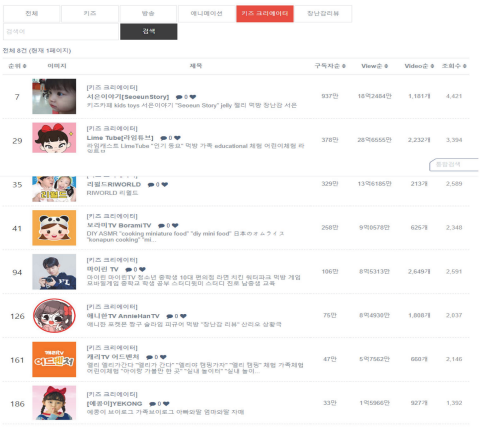
1. 들어가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셰어런팅 사례는 유튜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음

◆키즈 크리에이터 뿐만 아니라 자녀와의 일상을 담은 '육아 브이로그' 콘텐츠도 다수





2. 프랑스 입법 동향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프랑스 Bruno Studer 의원/ 르네상스 정당 소속/ 교사 출신/
문화 교육위원회 의장/ 아동권리대표단 참여

-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의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착취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소위 "아동 인플루언서 법안") (2020)
-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특정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자녀 보호 기능 사용을 장려하는 법안(2021)
- 아동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법안(2023)

2. 프랑스 입법 동향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규제에 관한 법(2020)

[입법취지]

- 인터넷 플랫폼 상에 배포를 목적으로 제작되는 아동이 등장하는 동영상의 경우, 촬영 시간, 그로 인한 수익 등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어, 공연 및 연예활동을 하는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음
- 오늘날 어린이 유튜버 및 온라인상에 어린이 "인플루언서"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활동을 노동으로 간주하여 법의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함.

➢ **노동법 등록, 사전 허가 의무화, 재정적 의무, 인터넷 상의 회색지대 관련 규정, 동영상 공유 온라인 플랫폼의 참여 장려, 삭제 권리 등**

2. 프랑스 입법 동향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온라인 플랫폼에서 16세 미만 아동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규제에 관한 법(2020)

◆ **노동법에 등록**: 광고나 이벤트 행사 등에서의 어린이 모델 및 연예인처럼 온라인 시청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어린이 또한 노동법의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함.

◆ **사전 허가 의무화**: 자녀들을 대상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그 영상을 방송하고자 하는 부모는 사전에 행정당국에게 개별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함.

- 행정당국은 부모에게 아동의 권한에 대한 정보 및 인터넷 상에 아동의 이미지를 노출하는 행위에 따른 결과 및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개별사전허가증은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재발급 받아야 함.
- 동 허가증은 취소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는 일시 정지될 수 있음.
- 개별사전승인제도는 아동의 건강 및 학교 교육과 양립이 가능한 고용조건을 보장함.

2. 프랑스 입법 동향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재정적 의무**: 행정당국이 지정하는 수입의 일부는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예금공탁금고에 보관되어 관리됨.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750유로의 벌금형에 처함.

◆ **인터넷 상의 회색지대 관련 규정**: 어린이 인플루언서의 활동이 《고용관계》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도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 마련. 동영상의 시간이나 동영상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영상의 방송으로 얻은 수익과 더불어 이를 신고해야 함. 또한 수익의 일부를 예금공탁금고에 보관해야 함.

◆ **동영상 공유 온라인 플랫폼의 참여 장려**: 아동보호단체들과의 협력 하에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이미지가 노출되는 데에 따른 결과나 영향 및 법적·심리적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헌장을 마련하도록 장려. 최고시청각위원회(CSA)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동 헌장의 채택을 장려하고, 동 헌장의 적용 및 효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함.

◆ **삭제 권리**: 아동의 직접적 요청이 있을 시, 해당 플랫폼은 관련 동영상을 삭제해야 하며, 이에 대한 부모의 동의는 필요 없음.

2. 프랑스 입법 동향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아동의 초상권을 보호하는 법안(2023)

[입법취지]

- 아이들이 13세가 되기 전 SNS에 공유되는 사진이 평균 1,300건
- 무분별하게 공유된 사진은 아이들이 범죄에 휘말릴 가능성 있음
- 아이 사진이 아동 음란물에 악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학교 내 괴롭힘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
- 포르노그래피 포럼에서 교환되는 사진의 50%는 원래 부모가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것(성착취 위험 있음)

제1조 부모의 권한 정의에 개인 정보 개념을 도입
제2조 미성년자의 이미지 권리 행사가 부모 양측에 의해 공동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명시
제3조 미성년자의 이미지 권리 행사에서 부모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판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
제4조 부모의 이익이 아동의 초상권 행사와 관련하여 아동의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부모의 권한을 제한

3. 프랑스 부모 조사:

SNS 상에서 프랑스 부모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조사 방법

대상 인구

- ***대상 1 :***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대상 2*** : 1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인플루언서

응답자 수: 1273 *(대상 1 : 1,000명 / 대상 2 : 273명)*
설문 종류 : SNS 설문조사
설문 기간 : 2022년 11월 9일~ 11월 21일

표본

대상 1

부모

- 남성 46%
- 여성 54%

- 31% 18-35세
- 44% 35-45세
- 25% 46세 이상

자녀

- 85% 13세 이하 연령
- 72% 부모와 동거

대상 2

부모

- 남성 60%
- 여성 40%

- 49% 18-35세
- 34% 35-45세
- 16% 46세 이상

자녀

- 79% 13세 이하 연령
- 62% 부모와 동거
- 25% 한부모와 동거

출처: 프랑스 디지털 교육 및 부모 지원 단체(OPEN) www.open-asso.org

Open
Observatoire de la Parentalité & de l'Éducation Numérique

1) 프랑스 부모 중 SNS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비율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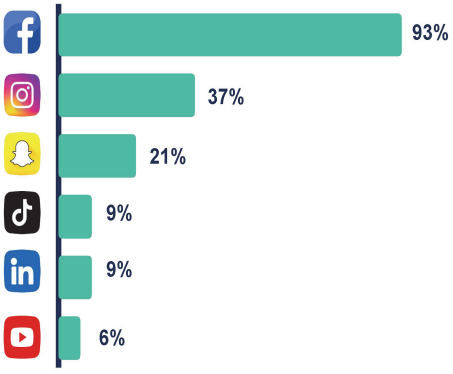
(어떤 콘텐츠든) 한 달에 최소 한번 게시물을 올린다.

7%

최소 하루에 한번 게시물을 올린다.



여러 종류의 SNS를 사용하는 프랑스 부모
(평균 두 개 이상의 SNS)



프랑스 부모들이 사용하는 주요 SNS

2) 프랑스 부모들이 좋아하는 주제 : 뉴스 소식, 일상 생활, 가족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뉴스 소식 | 일상 생활 | 가 족

- ◆ 나이가 많은 부모(46세 이상)들의 경우 일상 생활 및 가족 관련 콘텐츠를 덜 게재하는 경향을 보임
- ◆ 젊은 부모와 여성들은 가족 관련 콘텐츠를 더 게재하는 경향을 보임
  - 36세 이하의 55%
  - 남성 36% 대비 여성은 49%

3) 셰어런팅(sharenting)은 널리 퍼진 활동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3% 의 프랑스 부모는 자녀에 대한 콘텐츠를 이미 공유한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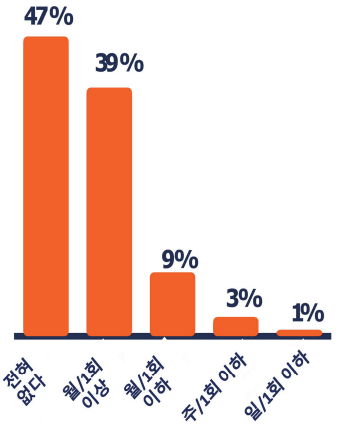
- **43%**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콘텐츠 공유를 시작했다.
- **91%** 아이가 0세~5세 사이일때 콘텐츠 공유를 시작했다.

◆ **부모의 3%는** 자녀의 사진/영상을 배포하는 **인플루언서***다.

**활동과 관계된 혜택(선물, 프로모션, 사례금)을 이미 받아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

◆ **고등교육 직업군(CSP+)**에서 자녀의 사진/영상을 **배포한 적이 없는** 부모가 더 많았음

자녀 관련 콘텐츠를 부모가 공유하는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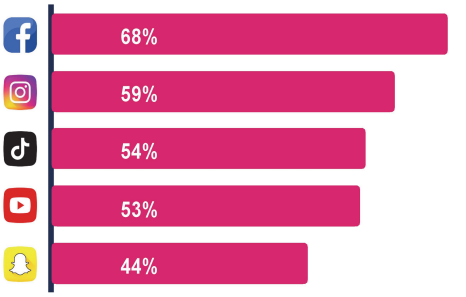
4) 부모 인플루언서는 SNS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1%의 프랑스 부모는 인플루언서

- **93%** ***최소 주1회 게시물 업로드***
  자녀 관련 콘텐츠든 아니든, 부모 인플루언서의 절반 이상이 매일 게시물을 올림
- **57%** ***일일 여러 번 게시물 업로드***
  주로 일상생활, 뉴스 소식 및 가족에 대한 콘텐츠

프랑스 부모들이 사용하는 주요 S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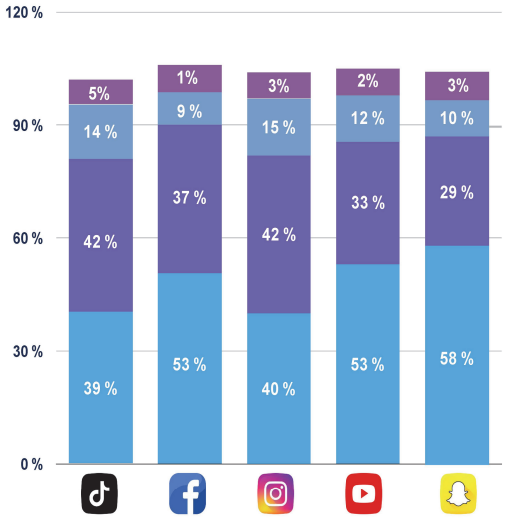


◆ 부모 **인플루언서 열명 중 일곱**은 페이스북을 사용

◆ **젊은 부모**(18-35세)들은 **인스타그램** 및 **틱톡**을 더 사용

5) 부모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수는 ?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부모 인플루언서의 대다수는 구독자 수가 적은
나노 인플루언서 *(구독자 10,000명 까지)*

- 구독자 100,000명 이상
- 구독자 10,000명 이상 ~ 100,000명 미만
- 구독자 1,000명 이상 ~ 10,000명 미만
- 구독자 1,000명 미만



6) 부모 인플루언서가 선호하는 테마는 "자녀(아이)"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85% 의 부모 인플루언서는
최소 주 1회 자녀의 사진/영상을 업로드

38% 최소 일일 1회 업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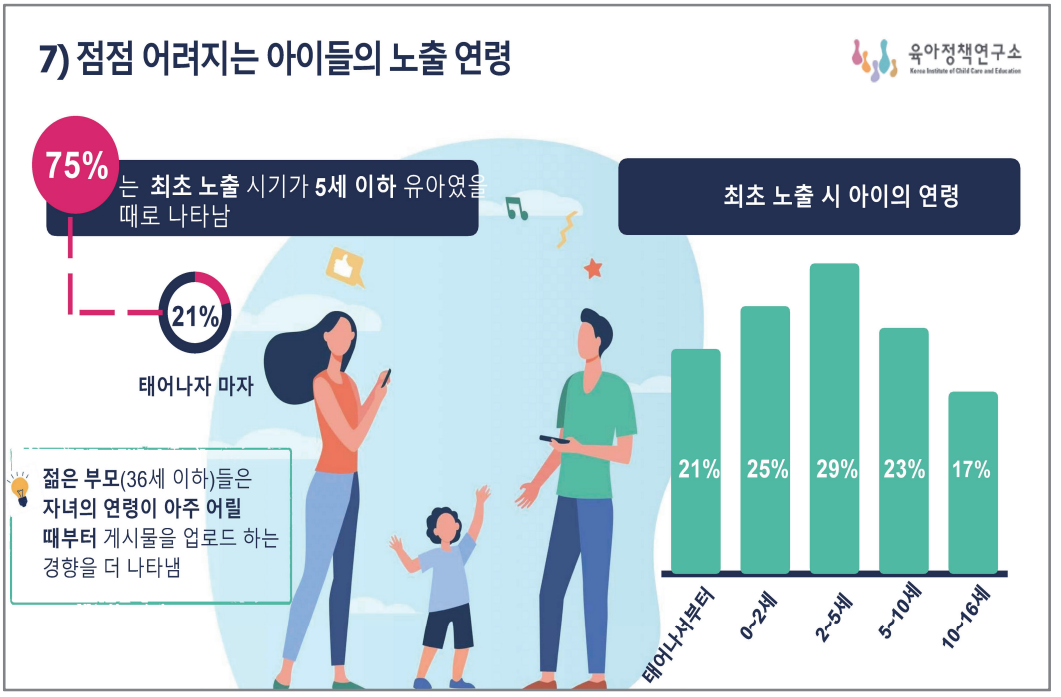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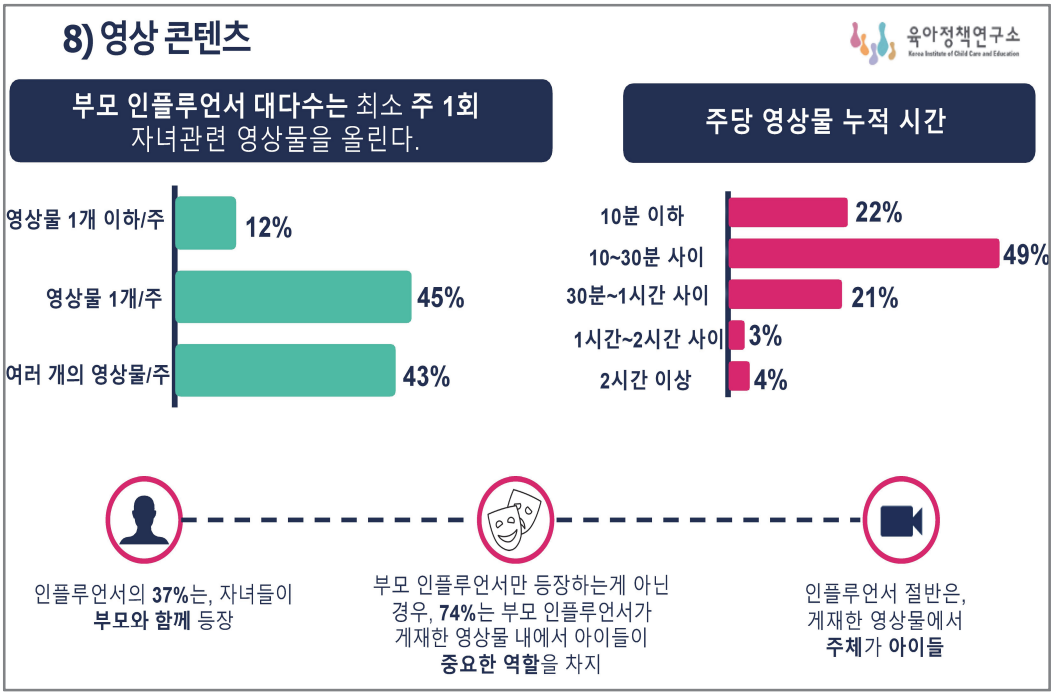
애들아, 촬영이니까 웃자 !

- 응답자의 **41%**는 자녀 관련 콘텐츠를 공유할 때 **영상 포맷**만 배포한다고 응답
- 응답자의 **절반**은 **혼용된 콘텐츠**(사진 및 영상)를 게시한다고 응답
- **12%**만 자녀 관련 콘텐츠를 **사진**형태로**만** 게시한다고 응답

부모의 연령에 따라 활동이 달라짐

젊은 부모(36세 이하)들은 **영상 포맷을 우선하는** 반면 나이가 많은 부모들은 사진 포맷을 더 보편적으로 사용


7) 점점 어려지는 아이들의 노출 연령
육아정책연구소
75%
는 최초 노출 시기가 5세 이하 유아였을
때로 나타남
21%
태어나자 마자
젊은 부모(36세 이하)들은
자녀의 연령이 아주 어릴
때부터 게시물을 업로드 하는
경향을 더 나타냄
최초 노출 시 아이의 연령
21%
25%
29%
23%
17%
태어나서부터
0~2세
2~5세
5~10세
10~16세


8) 영상 콘텐츠
육아정책연구소
부모 인플루언서 대다수는 최소 주 1회
자녀관련 영상물을 올린다.
영상물 1개 이하/주
12%
영상물 1개/주
45%
여러 개의 영상물/주
43%
주당 영상물 누적 시간
10분 이하
22%
10~30분 사이
49%
30분~1시간 사이
21%
1시간~2시간 사이
3%
2시간 이상
4%
인플루언서의 37%는,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등장
부모 인플루언서만 등장하는게 아닌
경우, 74%는 부모 인플루언서가
게재한 영상물 내에서 아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
인플루언서 절반은,
게재한 영상물에서
주체가 아이들

9) 아이들이 무엇을 하게 됨을 의미할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부모 인플루언서 : 준비, 촬영, 반복

60% 부모는 **1시간**까지 준비 시간을 가졌다고 응답
(사진/영상 등 포맷 상관없이)

60% 는 콘텐츠 게시 전에 **2회 ~10회** 반복이 필요하다고 응답
(사진/영상 등 포맷 상관없이)

응답자의 **76%**는 SNS상에 자녀 사진/영상물 공유에 대해 가족 구성원, 친구 또는 다른 사용자의 **비난**을 받았다고 응답함



10) 부모 인플루언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7% 인플루언서 활동이 **유일한 수입원** *인 부모 인플루언서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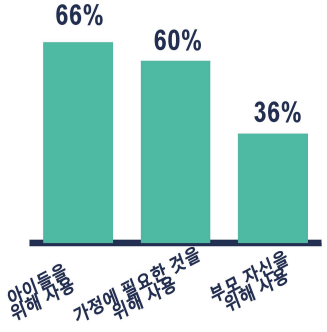
70% **월 5.000 €**까지 번다고 응답한 부모 인플루언서

49% **선물**을 받거나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부모인플루언서
- *이 중, 62%는 최소 2주마다 선물을 받고 25%는 주당 1회에서 여러 번 선물을 받음*

77% 현재 최소 한 개의 제휴가 있는 부모 인플루언서
- *36%는 다수의 제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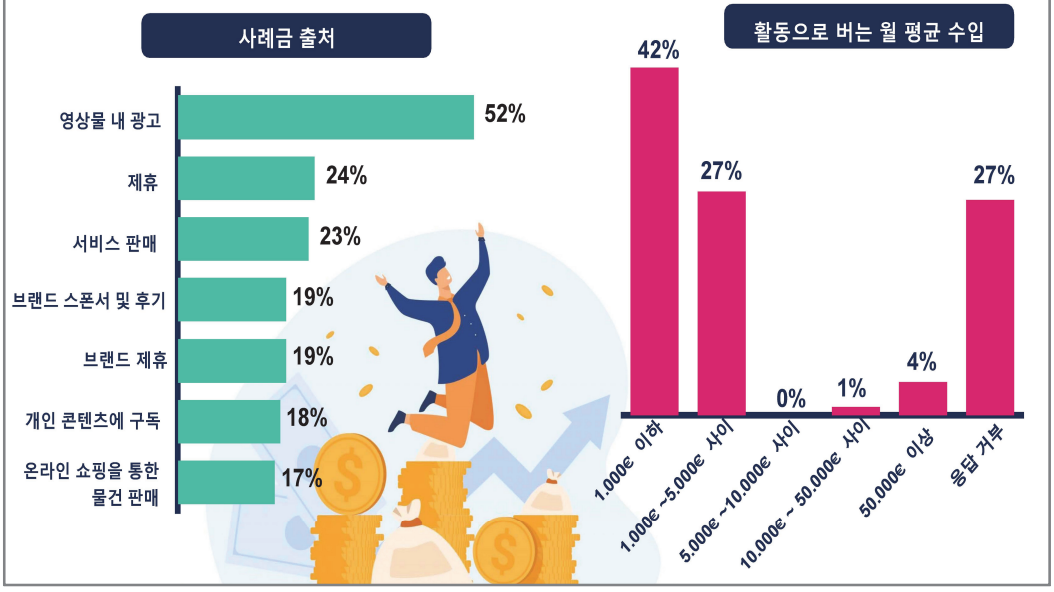
* 응답자중 사례금을 받는 부모 인플루언서

부모 인플루언서의 사례금 사용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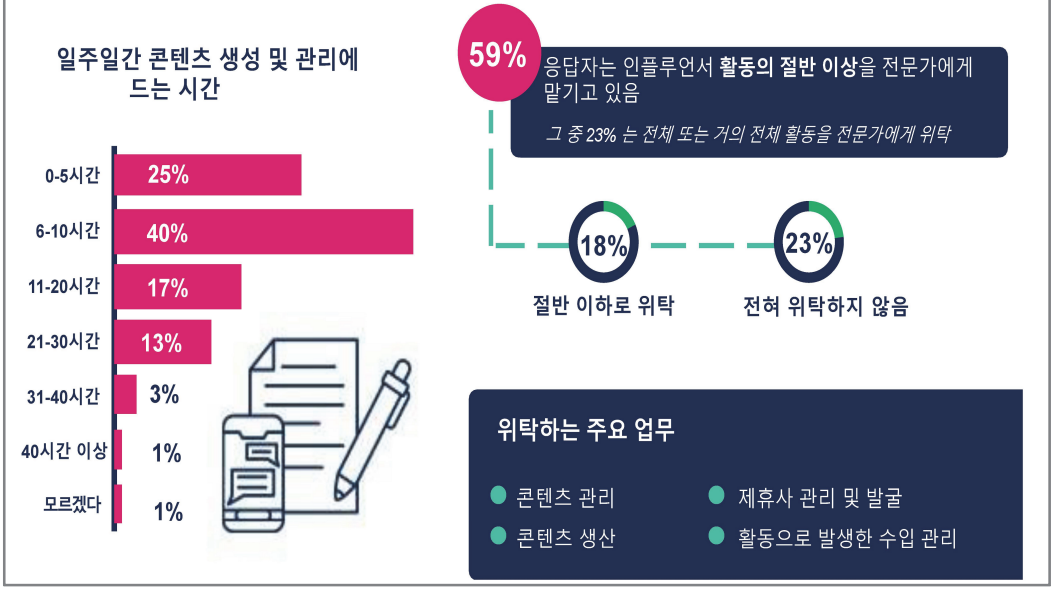
11) 부모 인플루언서: 사례금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2) 부모 인플루언서 : 콘텐츠 관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3) 자녀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실제로 어떤 규칙들을 따를까?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4%	42%	36%	33%	30%
부모 인플루언서가 응답	*부모 인플루언서가 응답*	*부모 인플루언서가 응답*	*부모 인플루언서가 응답*	*부모 인플루언서가 응답*
콘텐츠 업로드 전에 자녀의 동의 구하기	휴식시간, 숙제 시간, 여가 시간을 방해하지 않기	콘텐츠 만드는 동안 쉬는 시간 갖기	자녀와 함께 만드는 콘텐츠에 할당된 시간표 정해 놓기	자녀의 사진/영상물 배포 빈도를 최대로 설정 해놓기



응답자의 **67%**는 자녀의 사진/영상물 배포 관련 법적 규제가 존재함을 믿지 못하는 반응을 보임

- 2020년 10월 19일자 스투더 의원법은 아동 초상권의 상업적 활용을 규제.
- 프랑스 형법 제 226-1조에 근거 미성년자의 사생활 침해는 처벌받음.

4.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CNIL) 여론조사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조사 방법 및 목적

대상 인구
- *대상 1* : 8세 ~ 17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대상 2* : 10세 ~ 17세 아동

응답자 수: 1502 *(대상 1 : 1,000명 / 대상 2 : 502명)*
설문 종류 : 온라인 설문조사
설문 기간 : 2020년 12월 2일~ 12월 10일

조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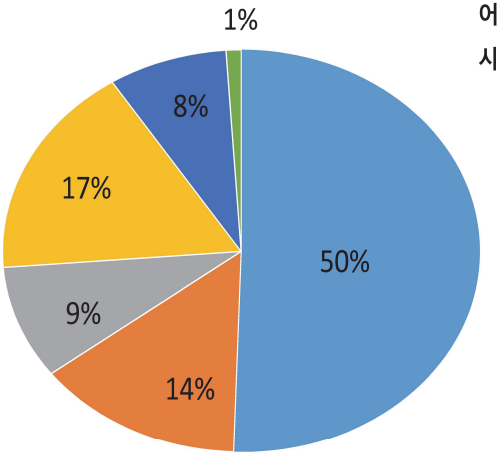
디지털 환경에서 미성년자의 권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적용가능한 범위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조언들을 제한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채택하기 위하여

CNIL.
COMMISSION NATIONALE INFORMATIQUE & LIBERTÉS

출처: 프랑스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CNIL)

1) 사용자 연령 및 동의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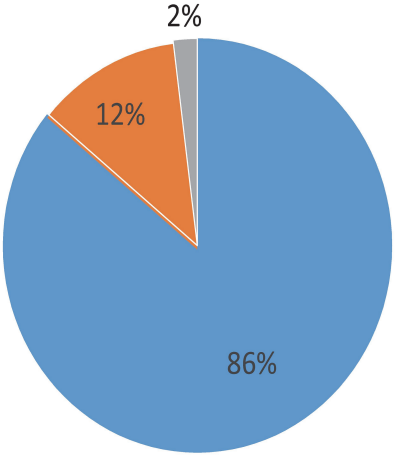


어떠한 형태의 온라인 서비스에 사용자의 연령 확인 시스템을 적용 하는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액세스 하려면 연령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모든 온라인 서비스
- 18세 이하 청소년용 모든 온라인 서비스
- 15세 이하 청소년용 온라인 서비스만
- 모든 온라인 서비스
- 어떠한 온라인 서비스도 안됨
- 응답없음

2) 사용자 연령 및 동의를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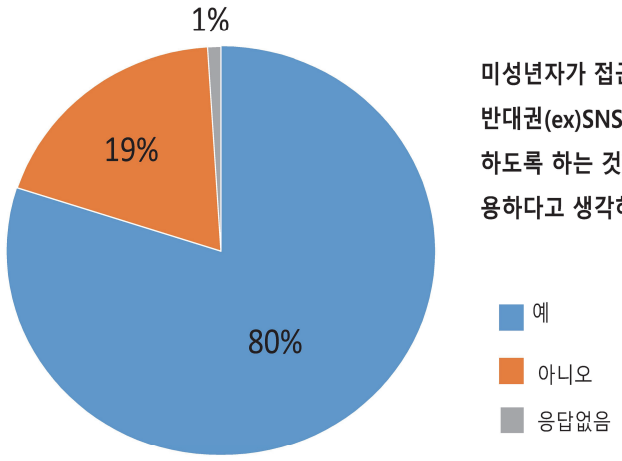


연령확인을 위해 구축된 시스템에서 필요하다면 미성년자 부모의 승낙 유무도 알 수 있게 해줘야 할까요?

- 예
- 아니오
- 응답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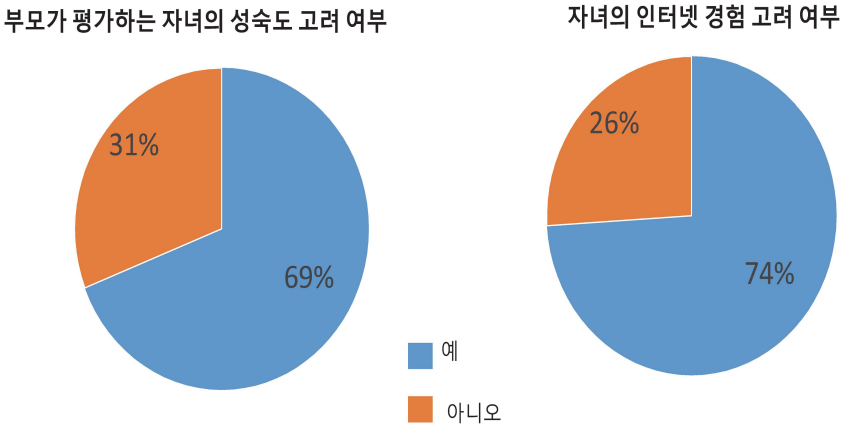
3) 미성년자의 개인 데이터 관련 권리 행사 : 접근권, 수정권, 삭제권, 반대권 등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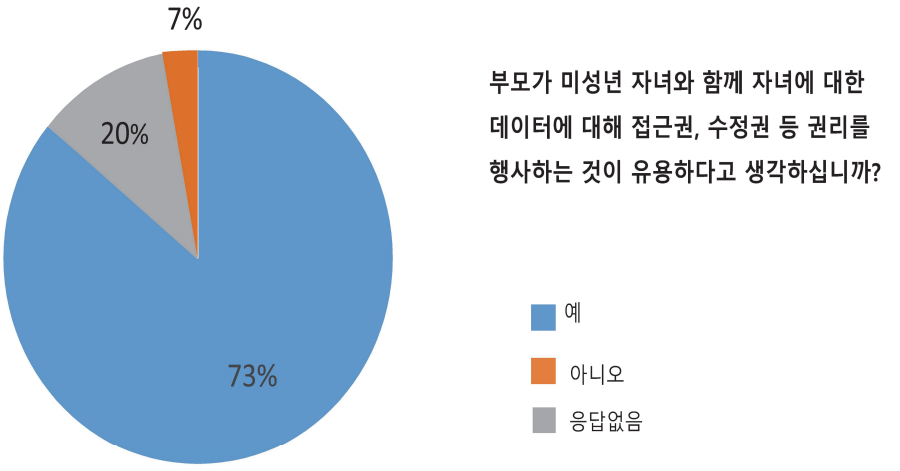
4) 미성년자의 개인 데이터 관련 권리 행사 : 접근권, 수정권, 삭제권, 반대권 등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 미성년자의 개인 데이터 관련 권리 행사 : 접근권, 수정권, 삭제권, 반대권 등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5. 나가며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프랑스의 경우 사생활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우리와는 분위기가 다를 수 있으나, "부모는 자녀의 사생활 보호 의무를 지닌다"는 입법취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

◆또한, 프랑스는 정책 입안 전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 제정 시 이러한 여론조사 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과 규제에 대한 수용성 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임

◆그 외에 프랑스는 아동을 보호하는 관점과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에도 아동이 주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도입하기에 앞서 이러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해 보임


감사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NOTE

Session 1
토론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와 과제

김 형 모
경기대학교 교수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와 과제

김형모 교수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와 과제
  - 셰어런팅을 중심으로
  -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왜 프랑스 사례?
- 프랑스에서는 '셰어런팅 금지 법안'이 논의 중
- 정당 '르네상스' 소속의 브루노 스투터 의원이 발의
- '부모는 자녀의 사생활 보호 의무를 지닌다'
- 자녀의 초상권 보호를 부모의 의무로 명시

- 자녀의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려면 부모는 자녀의 나이.판단력 등을 고려해 당사자인 아이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함
- 사진을 올리기 전에 미리 자녀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온라인에 공유한 사진이 자녀의 존엄성 등에 심각한 피해를 입힌다고 판단되면, 부모는 자녀의 초상권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할 수 있음
- 자녀의 사진 공유가 단순히 사생활 침해 뿐만 아니라 아동 음란물 등 범죄 악용과 학교 내 괴롭힘과도 연결될 수 있음

3

-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만 14세 미만의 아동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함

4

- 아동복지법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6조(사생활보호)
  - 아동은 그 누구라도 사생활, 가족, 가정, 통신에 대해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으로 간섭받지 않으며 또한 명예나 명성에 대해 불법적인 공격을 받지 않은다.
  - 아동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5호(2021): 디지털 환경과 관련한 아동의 권리
  - E. 사생활권

5

아동기본법

- 2023.05.04 강훈식 의원 발의

- 아동기본법: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해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법

- 제11조(보호권)
  - 아동은 사생활을 보호받고 인격 또는 명예를 침해받거나 훼손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 아동의 권리 vs 부모의 권리

6

NOTE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와 과제: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문

배 건 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온라인상 아동 프라이버시 보호 실태와 과제: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문

배 건 이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먼저 육아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온라인상의 아동권리 보장에 관한 주제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박상희 소장님과 김은영 실장님 그리고 오늘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 초대해 주신 김아름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해외사례 비교를 비롯해, 향후 국내 관련 정책적 제언까지 풍부하고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 진행하시는 연구에 공감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토론하고자 합니다. 발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보다는 향후 우리사회에 프랑스 법제의 내용이 미칠 영향을 고려해 법정책적 쟁점에 대한 제언으로 토론의 내용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간략히 토론의 내용을 전달드리기 위해 이하에서는 개조식으로 작성드리는 점에 대해 참석해주신 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1 유니세프 노르웨이위원회 “스탑 셰어런팅”의 국내법적 함의

- 유니세프 노르웨이위원회가 “부모가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기 전에 자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게시하기 전 자녀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권리[1]를 생각해야 하고, 자녀의 사진이 온라인에 배포될 시 사진수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국내 셰어런팅에 대한 법적 규제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입법적 쟁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 판단됨

1) 아동 역시 연령에 상관없이 성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갖는 주체로서, 유니세프 노르웨이 위원회가 말한 자녀의 사생활보호에 관한 권리는 현행 헌법상 제17조상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에 관한 기본권을 의미하며, 이는 내국아동뿐만 아니라 외국인 아동에게 동일하게 인정되어야할 권리이므로 아동권리협약 제00조에 따라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인권성을 갖기도 함. 헌법 제17조가 국내판례에 따란 보호하고자 하는 사생활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화 되어가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 관련 미국판례의 영향이 많아지면서, 현재 대부분의 문헌은 헌법 제17조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와 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이 동일한 의미로 보고 기술하고 있어, 본 토론문 역시 이에 따르고자 함

✓ 첫째, 일반적으로 셰어런팅을 부모의 행위로만 국한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은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의 개념으로 보다 넓게 보고 있어, 부모가 아닌 보호자에 의한 아동 프라이버시권 침해도 셰어런팅의 범주에 놓고 제한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둘째, 일반적 SNS는 부모가 아동의 게시물을 업로드 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이 허용되어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부모의 업로드가 친구맺기 등을 통해 양자 간에만 허용되는 경우도 있음(특정 다수)(특히 카톡 단체방이나 회원에 한해서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이처럼 아동의 자기결정권 보호에 가치를 두어 셰어런팅의 범주를 게시물 유형과 형태에 따라 구분하여 규제할 필요성 여부

✓ 셋째, 부모가 온라인 게시하기 전에 받아야만 하는 자녀의 승인(법적 동의)만 있다면, 그 내용과 빈도에 상관없이 부모의 온라인 게시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 정보게재시 아동의 법적 동의권의 효력이 성년자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할지라도, 아동복리에 대한 국가책임의 관점에서는 가족 간이라 할지라도 보호차원에서 개입이 가능할 것임
- 현재는 아동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직접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부모가 게시한 매체물이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예견될 정도의 개연성만 갖춘다면 게시물 삭제 및 변경을 요구할 수는 있음
- 문제는 이 같은 개연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아동의 동의라는 것이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법익형량 판단시 성년보다 더 민감하게 봐야 할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 같은 내용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공적 기구를 통해 침해여부가 확정되어 구제절차가 마련되는 구조라면 적어도 판단시 고려원칙이나 요소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그 내용이 규정될 필요성 여부

✓ 넷째, 14세 이상의 아동은 자기의사 반영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그 이하의 아동의 경우 동의가 있었다 할지라도 실제 부모의사가 더 중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셰어런팅에 있어 연령기준별 규제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함

✓ 다섯째, 보호자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경우 아동입장에서는 권리구제 역시 보호자 등의 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권리구제를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 어떤 것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인지 고려가 필요함

2 프랑스 아동 이미지 상업적 이용규제법의 국내법적 함의

- 현재 프랑스 아동 이미지 상업적 이용규제에 관한 법률을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입법례로 들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노동법적 규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법률임. 따라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입법례로 곧바로 인용되기에는 추가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됨

- 예컨대, 해당 법률이 제한하고자 했던 것은 아동의 상업적 이미지 활용이 아동의 관점에서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아동 근로보호의 관점에서 보호를 위해 사전허가제를 도입한 것이므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호는 부모의 온라인 게재행위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얻어지는 법적 효과라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이는 기술발달에도 불구하고 아동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통적인 법리를 적용한 것이며, 기존과 다른 점은 통상적인 아동 근로보호의 규정은 사용주를 중심으로 한 것인데, 해당 법률은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모에 의한 간접적 근로형태까지 아동의 복리 관점에서 폭넓게 제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는 점이 중요함

- 프랑스 노동법상 16세 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의무교육연령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근로제한이 적용되는 대상이기 때문이므로, 교육과 관련해 연령기준이 갖는 의미 등을 비교법적 시사점에 추가되면 좋을 듯 싶음

- 프랑스법률과 같은 입법례를 한국적으로 적용한다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입법적 고려가 필요할 것임

  ✓ 첫째, 부모(보호자 포함)에 의한 아동 이미지 상업적 이용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근로규정은 고용계약에 따른 사용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활동하는 15세 전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모의 영상촬영은 입법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개별 법률 제정방식에 대한 고려가 제시될 수 있음
  - 프랑스 역시 법률법을 통해 노동법전에 규정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입법례로 제시된 법률이 아동청소년 근로에 관한 법률법인 여부 확인이 필요함

✓ 둘째,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프랑스처럼 아동국가책임 및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탁공탁금고' 형태의 규정은 국내법적 해석을 더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예금공탁금고의 법적 성격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우리의 경우 이 같은 제도도입시 부모의 양육권 및 재산권 침해 논의가 제기될 수 있어 국가의 관리 및 지급보장 형태에 대한 장기적 논의가 필요함

3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의 내용

• 일반적으로 프라이버시권은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보호, 사생활의 자유, 정보자기결정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데, 아동의 개인 데이터 접근권, 수정권, 삭제권, 반대권은 정보자기결정권으로만 이해될 수 있으므로, 개념상의 내용을 보완해서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법익인 프라이버시를 영미식으로 내밀한 사실의 공시, 안온침범, 오인적 기술, 상업적 전용, 명예권, 초상권으로 볼 수도 있고, 독일처럼 영역으로 구분하여 보호정도에 따라 내밀한 사적 영역(본질침해 금지), 사적 영역(비례원칙에 따른 중대 옹기상 또는 언론보도이익 우위를 차지하는 경우 제한 정당화), 사회적 영역(직업활동이나 공적활동으로 인해 언론보도 허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음

• 아동의 관점에서 보면,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는 최종적으로는 아동의 의사표명이 가능해야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프라이버시권의 내용으로서 국가에 의해 공적 기관이나 주체를 통해 침해된 아동의 프라이서비권 보호를 위한 청구가 인정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야만 하는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Session 2
발표

영아유기 실태 및 과제

김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영아유기 실태 및 과제

김 자 연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아동 권리 보장과 학대 예방에 중점을 두어 기획된 기본과제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의 일환으로 연구의 주요 대상을 영아로 집중하여 유기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됨.

-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모든 국민의 존엄성을 보전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
- 특히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가지게 되는 존엄성, 가치, 행복 추구권은 아동[2]학대 발생건수와 발견율의 꾸준한 증가추세와 견주어 아동학대 문제에서는 개선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임.

- 아동학대발생건수는 2021년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에 의하면 2018년 (24,604건), 2019년 (30,045건), 2020년(30,905건), 2021년(37,605건)
- 피해아동 발견율은 2018년(3.0‰), 2019년(3.8‰), 2020년(4.0‰), 2021년(5.0‰)[3]

2)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

3)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발견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5&conn_path=I2, (인출일: 2023. 02. 28)

□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0~3세의 경우, 2021년 기준으로 전체 건수 대비 10.03%였으며, 2018~2021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11.0% 내외로 비중이 유지

- 2021년 기준, 18세 이하 아동학대 유형별 빈도는 정서학대 (51.4%), 신체학대 (37.7%), 방임 (9.0%), 성 학대 (1.9%)의 순임.
- 0~3세의 경우, 18세 이하 기준과 학대유형 빈도순은 같으나, 비중에서 신체학대는 적게 (25.2%) 나타난 반면 방임은 전체 아동학대 빈도에서 높은 비율 (21.9%)로 확인됨[4].
-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 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 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함[5].
- '방임'의 하위분류로 '유기'가 포함되며, 유기의 구체적인 사례는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지는 행위,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가 있음[6].

4)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10&conn_path=I3, (인출일: 2023. 02. 28)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125&ccfNo=1&cciNo=1&cnpClsNo=1, (인출일: 2023. 06. 20)

6) 5)와 동일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7)]

□ **아동학대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의학적·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영아학대의 범주 및 개념 구체화**

□ 영아학대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자료를 검토하여 주요 쟁점 도출

□ 영아유기 관련된 정책 및 입법자료를 조사하며 영아유기사건에 대한 사례 수집을 통해 영아유기관련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 분석

□ **영아학대와 유기 사례 및 2차 자료 수집을 통해 영아유기 발생규모 및 예방 대책 검토**

□ 해외자료 분석을 통해 영아학대 및 유기 예방관련제도, 유기아동 보호제도 등에 대한 사례 검토

□ **다학제적 관점에서 현장전문가 및 학계 등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영아유기 예방 및 사후관리 대안 수집**

□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연령 기준, 영아유기 발생원인, 관련 법령의 개정방향, 영아 유기관련 정책개선 설문조사 수행

□ **영아유기 개선방안 도출**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2차 자료 분석 및 관련 정책 검토, 법제도 분석, 해외자료 분석, 심층면담, 전문가 의견조사를 수행

- 연구와 관련된 주요 쟁점사항, 정책방향, 연구결과 공유 등을 목적으로 정책토론회 개최 및 전문가 자문의견 수집

□ 문헌연구

- 연령별 아동학대에 대한 의학적·사회학적 기준 탐색
- 영아유기와 관련된 예방 및 대응 관련 선행연구 및 관련 보도 자료를 검토

7) 연구내용은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 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에서 살펴볼 내용 전반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이 발제에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 내용을 위주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영아유기에 대한 선행연구 및 자료를 검토하여 영아유기의 위험요소 파악
- 영아학대 및 유기 실태,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국내외 자료를 분석

□ 2차 자료 분석 및 관련 정책 검토

- 아동학대 실태 분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련 기관의 보고서, 통계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태 자료 수집·분석
- 영아학대에 대한 연도별 추이 및 아동유형 등 영아학대 및 유기에 대한 현황 검토
- 입양 및 위탁가정 등 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며 영아학대 및 유기 후 사후관리 사례를 수집하여 개별 사례를 통해 학대예방 및 사후관리에 대한 접근 방법 및 정책적 보완점 도출

□ 법제도 분석

- 출산 및 입양, 영아유기와 관련된 정책 및 입법 자료를 활용하여 영아유기사건을 중심으로 판례 검토
- 영아유기관련 법제도에 대한 체계적 분석

□ 해외자료 분석

- 국외사례의 문헌 및 정책 자료 수집을 통하여 출산 및 출생신고 등에 대한 법적 도구와 절차, 행태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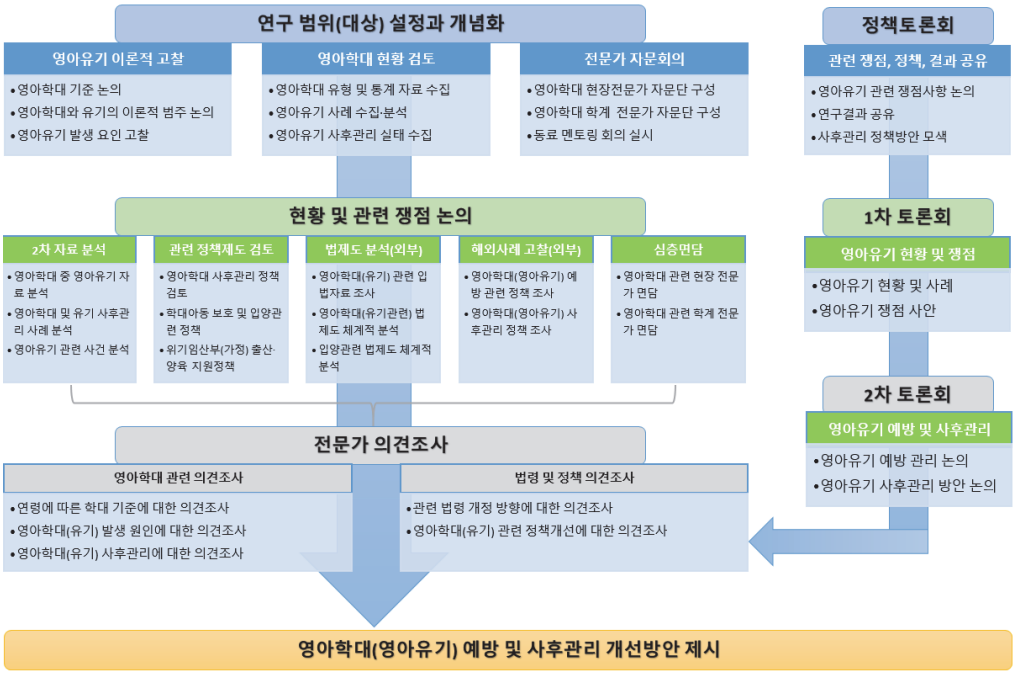
□ 간담회 및 심층면담

- 영아유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위해 구급대원, 경찰 관계자 등과 심층면담
- 한부모, 미혼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임신-양육-출산 관련 심층면담

□ 전문가 조사

- 연령에 따른 학대 기준에 대한 의견조사
- 영아 유기 발생 원인에 대한 의견조사
- 관련 법령 혹은 발의된 법안에 대한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조사
- 영아 유기관련 정책개선에 대한 의견조사

[그림 1] 연구 흐름도



자료: 연구진 작성

3) 연구대상자 정의

□ '영아'의 기준을 의학적 관점보다는 아동의 발달, 보육과 돌봄의 측면에 더 비중을 두어 36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함.

- 의학적 기준: 태어나서 1개월까지를 신생아(newborn, neonate)라 하며, 1년까지를 영아(infant)라고 하며 이 시기를 영아기(infancy)라 부르며[8] 이때 신생아도 영아에 포함됨. 이후 만1세부터 6세까지를 유아(child)로 구분함.
- 보육 및 교육정책 기준: '영유아 보육'이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이하 '영유아'라 함)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함.[9]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8) 지제근(2004), 알기쉬운 의학용어 풀이집 제3판, 고려의학

9)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제2호,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0200000#. (인출일: 2023. 6. 8)

영아와 유아를 구분 짓는 기준은 없으나 만2세 반까지 영아반, 만3세 이상을 유아반으로 구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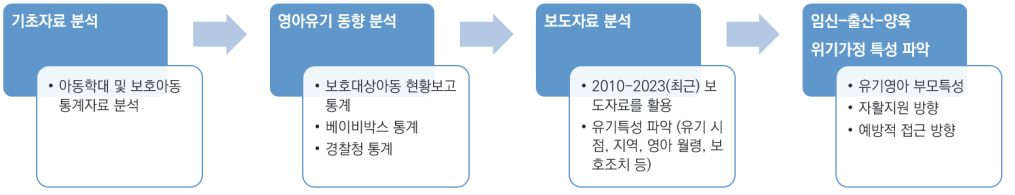
- 아동발달 기준: 25~36개월은 언어와 의사소통에 있어 익숙한 사람과 신체 부위에 대해 이름을 알 수 있으며 2~4개 단어로 문장을 말할 수 있고 이름, 나이, 성별, 친구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 수준임. 아동이 자신의 요구나 의사를 표현하여 충실하게 의사전달이 가능한 시점은 36개월 이후임.

3 영아유기 현황 및 사례

□ 영아유기 동향 및 현황 파악을 위해 다양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 내에서 유기영아의 전달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현장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거쳐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수행된 연구내용 및 결과 정리는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2] 영아유기 현황 및 사례검토 흐름



1) 아동학대 통계자료 분석

□ 통계청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점진적 증가

- 2018년 33,532건이었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1년 52,083건으로 19천 건 이상 증가

10)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보육사업안내, p.62.

□ 아동학대 발생 건과 피해 아동 발견율도 2018년 24,604건이었던 아동학대 발견 건수가 2021년 37,605건으로 증가해 약 13천 건의 증가세

- 0-17세 추계아동 인구 천 명당 피해 아동 발견율이 2018년에는 3.0‰에서 5.0‰로 증가

〈표 1〉 2018-2021 지역별 아동학대 신고현황 및 피해아동 발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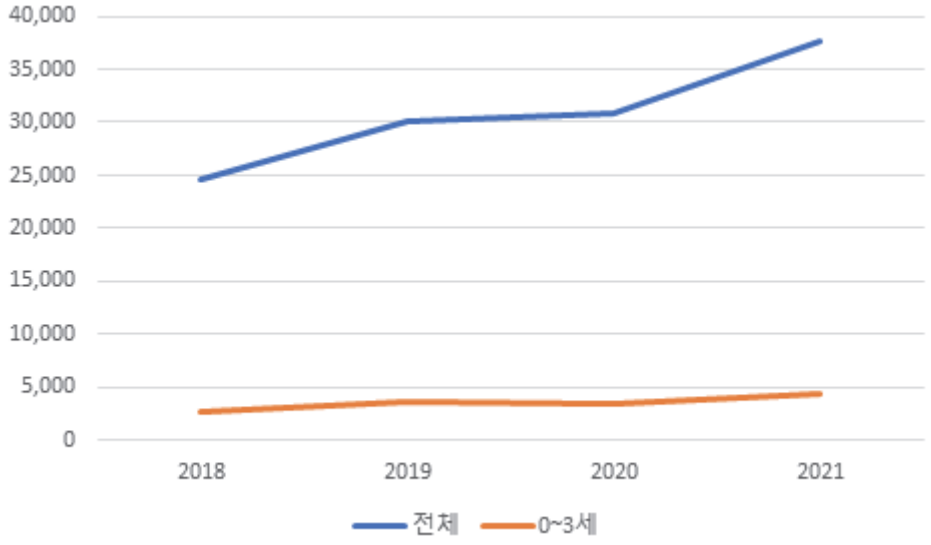
구분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	비율(%)	발생(건)	비율(%)	발생(건)	비율(%)	발생(건)	비율(%)
아동학대 신고현황	계	33,532	(100.0)	38,380	(100.0)	38,929	(100.0)	52,083	(100.0)
피해아동 발견현황	계	24,604	(3.0)	30,045	(3.8)	30,905	(4.0)	37,605	(5.0)

주: 0~17세 추계아동인구 천명 당 피해아동발견율임.
자료: 1)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2&conn_path=I2, 2023. 02. 28 인출.
2)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발견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5&conn_path=I2, 2023. 02. 28 인출.

□ 전체 아동학대 발생 건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비하여 0~3세 학대는 전체 건수 대비 11% 내외 유지

[그림 3] 2018-2021 학대피해 아동 현황(전체 및 영아)

단위: 건수



자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6&conn_path=I3, 2023. 02. 28 인출.

〈표 2〉 2018-2021 학대피해 아동 현황

구분		학대 발생 건수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	비율(%)	발생(건)	비율(%)	발생(건)	비율(%)	발생(건)	비율(%)
학대 발생 건수	계	24,604	(100.0)	30,045	(100.0)	30,905	(100.0)	37,605	(100.0)
	0-3세	**2,790**	**(11.34)**	**3,595**	**(11.97)**	**3,387**	**(10.96)**	**4,378**	**(11.64)**
학대아동 수	계	20,018	(100.0)	22,649	(100.0)	22,431	(100.0)	27,416	(100.0)
	0-3세	**2,070**	**(10.34)**	**2,273**	**(10.04)**	**2,263**	**(10.09)**	**2,749**	**(10.03)**

주: 동일한 아동이 한번 이상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 혹은 동일한 아동이 한 명 이상의 학대행위자 에게 학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 건수와 명수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6&conn_path=I3, 2023. 02. 28 인출.

□ 아동학대 대상 연령 0~3세의 경우, 전체 학대에 비하여 신체학대는 적게(25.2%) 방임은 높은 비율(21.9%)로 나타남.

〈표 3〉 2018-2021 학대 피해 아동 중 방임 현황

단위: 건(%)

구분	2018		2019		2020		2021	
	계	방임	계	방임	계	방임	계	방임
계	37,303	4,336	46,058	5,318	47,050	5,172	54,573	4,929
(비율)	(100.0)	(11.6)	(100.0)	(11.5)	(100.0)	(11.0)	(100.0)	(9.0)
1세 미만	625	313	794	314	747	324	925	335
1~3세	3,141	770	4,645	1,276	3,824	806	4,809	923
0~3세	**3,766**	**1,083**	**5,439**	**1,590**	**4,571**	**1,130**	**5,734**	**1,258**
(비율)	**(100.0)**	**(28.8)**	**(100.0)**	**(29.2)**	**(100.0)**	**(24.7)**	**(100.0)**	**(21.9)**

자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10&conn_path=I3, (인출일: 2023. 02. 28)

□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례는 2018년 28건에서 2019년 42건으로 증가

-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사례는 나이가 어릴수록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특히 0~3세가 65~67% 내외로 큰 비율을 차지함
-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큼.

〈표 4〉 2018-2021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2021	
	발생(건)	비율(%)	발생(건)	비율(%)	발생(건)	비율(%)	발생(건)	비율(%)
계	28	(100.0)	42	(100.0)	43	(100.0)	40	(100.0)
1세 미만	10	(35.7)	19	(45.2)	20	(46.5)	13	(32.5)
1세	8	(28.6)	5	(11.9)	7	(16.3)	2	(5.0)
2세	-	-	-	-	-	-	4	(10.0)
3세	-	-	4	(9.5)	2	(4.7)	7	(17.5)
0-3세	**18**	**(64.3)**	**28**	**(66.7)**	**29**	**(67.4)**	**26**	**(65.0)**

자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32&conn_path=I3, 2023. 02. 28 인출.

2) 영아유기 동향

□ 우리나라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통계, 보호대상아동 중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통계, 경찰청 통계에서 유기아동 현황 통계자료를 제시함.

-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통계에서 제시하는 아동수가 가장 많으며 2017~2019년 사이에 베이비박스를 제외하고도 100명 이상의 아동이 유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베이비박스 관련 연구에서 도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유기된 영아 167명 중 92명에 대해 유기시점 영아의 생후 날수(일, 월, 년)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생후 1개월 미만의 신생아가 대다수임.

〈표 5〉 유기 아동 현황 통계자료 (2017-2022년)

단위: 건,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유기아동(보호대상아동)[1]	261	320	237	172	117	-
베이비박스 유기(보호대상아동)[2]	167	171	130	-	-	-
베이비박스 유기(베이비박스)[3]						
계	92	-	-	-	-	-
0-3일	26	-	-	-	-	-
4-10일	40	-	-	-	-	-
11-30일	16	-	-	-	-	-
31-100일	5	-	-	-	-	-
100일-6월	3	-	-	-	-	-
6월-1년	2	-	-	-	-	-
1년 이상	0	-	-	-	-	-
영아유기 발생 건수(경찰청)[4]	-	-	-	107	76	64

주: 1)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는 당해에 보호조치된 아동을 모집단으로 하는 조사로 보호조치된 년도를 기준으로 보고되므로 발생 시점과는 차이가 있음.
2) 연도별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의 수는 2010년~2017년에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동을 조사되었으며, 유기 시점을 기준으로 보고됨.
3) 영아유기 발생 건수는 경찰청 통계 중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중 제6호에 해당하는 방임·유기 중 유기에 대하여 각 경찰청에 수기로 보고받은 통계임.
4) 이 표에서 제시된 내용은 [표 Ⅱ-2-8] 요약 통계자료임.
자료: 1)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3, 2023.4.30. 인출.
2)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항진),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김미애의원 대표발의), 2021.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Q0T1Z2W0O1T1U0S1X1A0V5N6J1H8. (2023.4.30. 인출) p. 9, 베이비박스 유기 비율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를 기준으로 계산됨.
3) 현소혜, 임정민, 안소영(2017) 아동유기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보건복지부, p. 284) 경찰청(2023), 내부자료

3) 보도자료 활용 영아유기 실태

□ 영아유기를 실제 행한 대상자 조사가 불가하여 간접자료를 활용하여 예방 정책 및 지원 정책이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파악하고자 함.

□ 온라인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영아유기'로 분류된 보도 자료를 유기 발생 시점(년)과 시도로 지역구분을 하여 2010년부터 2023년 초반까지 사건의 수(건) 또는 아동 수(명)로 간주하여 추세 비교

- 보도 자료에서 기술된 사건의 발생 시점 및 장소를 바탕으로 시점·시도 분류
- 전체 검색된 발생사건 296 건 중, 출산 직후부터 생후 1개월 시점까지 214건(72.3%)으로 2017년 수행된 베이비박스 연구[11]에서 밝힌 1,063명 중 생후 30일 이하 영아의 비중(90.0%) 보다 적긴 하나 유사한 패턴으로 추정됨.
-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2건에서 48건, 2017년부터 연도별로 10건 이내의 사건 보도는 출생아수 감소와도 연관성이 있겠음.

□ 유기아동의 발견상태 및 사후조치는 보도 자료의 특성상 '사망'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전체 296건 중에서 134건을 차지

- 유기아동이 생존한 경우는 대체로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달체계일 것이라 예측됨.

11) 현소혜, 임정민, 안소영(2017) 아동유기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보건복지부, p. 29

〈표 6〉 보도 자료를 활용한 시도별 '영아유기' 관련사건 발생 지역과 영아월령 (2010-2023년)

단위: 건, 명

구분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합계	합계	30	48	39	45	27	28	22	12	9	8	8	9	8	3	296
시도	서울	5	6	4	7	2	3	5	1	1	2	4	-	2	-	42
	부산	3	3	3	3	4	1	1	-	1	-	-	1	2	-	22
	인천	1	2	4	7	2	1	-	-	-	2	1	-	-	-	20
	광주	2	3	3	2	2	3	2	2	2	-	-	-	-	1	22
	경기	5	6	6	3	4	4	7	1	3		1	3	2	1	46
	경남	5	4	3	6	2	5	1	1	-	2	-	-	1	-	30
영아 월령	출산 직후	15	18	15	18	14	22	12	9	4	6	4	8	7	2	154
	생후 1개월 미만	6	9	15	15	6	3	5	1	-	-	-	-	-	-	60
	생후 1~3개월	5	7	5	2	3	0	1	0	1	0	2	0	1	0	27
	생후 4~6개월	2	2	2	3	2	1	-	-	1	-	-	-	-	-	13
	생후 7~12개월	2	3	-	1	-	1	1	1	2	-	-	-	-	-	11
결과 조치	사망	10	20	12	20	16	12	9	8	6	2	6	7	5	1	134
	병원 이송	7	2	2	4	1	3	3	1	-	-	-	-	-	-	23
	보호조치	6	5	8	8	3	3	1	3	2	3	1	2	2	1	48
	보호조치(가정위탁)	-	1	-	-	-	-	-	-	-	-	-	-	1	-	2
	원가정 복귀	-	3	-	-	-	1	3	-	-	-	-	-	-	-	7
	경찰조사	1	-	-	-	-	-	-	-	-	-	-	-	-	-	1
	관련정보 없음	6	17	17	13	8	9	5	-	1	3	1	-	-	1	81

주: 제시한 통계자료는 온라인 보도자료(사건발생 시점: 2010~2023년 초)를 기반으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재분류되어, 전체 사건발생수와 차이가 있어 결과해석에 주의요함.
자료: 분석에 활용된 모든 보도 자료는 '영아유기'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출처는 참고문헌에 별도로 정리하여 제공할 예정임.

□ 유기아동 월령(혹은 연령)에 따른 발견시점 상태 및 이후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출산 직후’의 경우 사망 (88건), 보호조치 (18건), 병원 이송 (12건)의 순으로 확인됨.

- 사망이 전체 154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생후 1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는 보호조치 (17건), 사망(12건), 병원 이송 (10건)으로 확인됨.

〈표 7〉 보도 자료를 활용한 ‘영아유기’ 관련사건 아동 월·연령과 조치결과 (2010-2023년)

단위: 건, 명

구분	사망	병원 이송	보호조치	보호조치 (가정위탁)	원가정 복귀	경찰조사	관련정보 없음	합계
출산 직후	88	12	17	1	-	-	36	154
생후 1개월 미만	12	10	17	-	1	-	20	60
생후 1~3개월	8	1	7	-	-	1	10	27
생후 4~6개월	3	-	3	1	-	-	6	13
생후 7~12개월	6	-	1	-	3	-	1	11
생후 12~24개월	2	-	-	-	-	-	3	5
생후 24~36개월	1	-	-	-	1	-	1	3
생후 25~36개월	3	-	-	-	-	-	-	3
3세	1	-	1	-	1	-	-	3
4세	-	-	1	-	-	-	-	1
5세	-	-	-	-	1	-	-	1
7세	1	-	-	-	-	-	-	1
미상	9	-	1	-	-	-	4	14
합계	134	23	48	2	7	1	81	296

주: 1) 제시한 통계자료는 온라인 보도자료(사건발생 시점: 2010~2023년 초)를 기반으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재분류되어, 전체 사건발생수와 차이가 있어 결과 해석에 주의 요함.
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2022)에 따르면 보호조치는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쉼터포함), 가정위탁, 입양기관 등으로 분류되며, 해당 표에서 보호조치(가정위탁)는 별도로 구분함 표기함.

자료: 분석에 활용된 모든 보도 자료는 ‘영아유기’ 키워드를 활용하여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수집되었으며, 출처는 참고문헌에 별도로 정리하여 제공할 예정임.

□ 보도 자료를 활용한 영아유기 발생사건 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영아유기는 출생 직후 혹은 신생아시기에 주로 발생하며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발견되는 빈도가 높음.
- 발견당시 사망으로 발견된 사례가 가장 많으며, 발견 장소로는 자택, 공용화장실, 종교시설 순으로 확인됨.
- 영아유기 사건은 사망으로 발견된 사례가 가장 많으며, 출산 직후와 생후 1개월 미만인 영아가 가장 취약한 시기임을 예측할 수 있음

- 따라서 영아유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 혹은 취약한 임신 혹은 출산 가구의 보호 및 구조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됨.

4) 임신-출산-양육 위기가정의 특성

□ 2010~2014년까지 5년 간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513명의 아기들[12]과 그들의 부모 정보를 분석한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13]의 결과를 통해 영아유기에 대한 예방적 접근의 방향성 모색을 하고자 함.

- 영아 유기 혹은 일시위탁 부모의 공통점은 경제적 어려움, 주거불안정, 한부모, 가족의 부재, 임신과 피임에 대한 무지, 아기의 건강이상, 비전형적인 혼인관계를 통한 출산, 원치 않은 성관계를 통한 출산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14]

- 베이비박스 아기를 다시 찾아가는 비율이 정부를 통해 되찾아가는 비율(14%), 베이비박스를 통해 직접 되찾아가는 비율(16%)로 베이비박스가 아기들의 '임시보호소' 역할도 인지되고 있음을 시사[15].

□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를 통한 의견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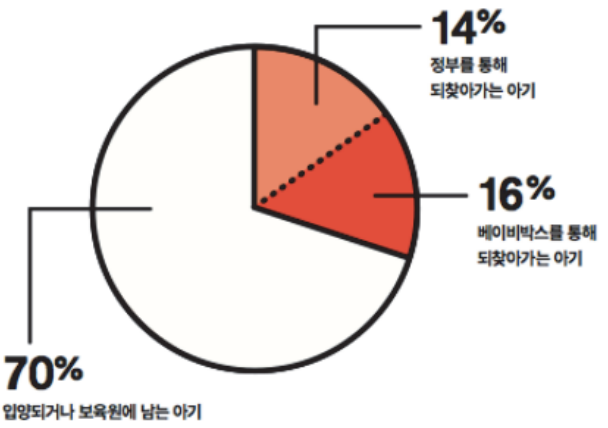
- 미혼모 가정의 경우, 직접 자녀 돌봄을 하는 경우가 많아 조건부 국가 수급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으며 취업을 통해 추가소득이 발생될 경우, 수급규모가 축소될 수 있어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하기도 함.

- 한국인 미혼모에 비해 외국국적 미혼모의 경우 출산으로 인해 고용상태 유지가 어려워 비자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이는 불법체류 신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임. 순차적으로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12) 난곡동 베이비박스 상담일지(2010.3월부터 2014년 7월)를 기준으로 513명의 자료를 분석함(출처: 사단법인비투비,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 p.9.)
13) 사단법인비투비,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 p.1
14) 사단법인비투비,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 pp. 5-14.
15) 사단법인비투비,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 pp. 2-3.

[그림 4]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중 부모가 다시 데려가는 비율

단위: %



자료: 1) 사단법인비투비,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 p.3,
2) (원자료 출처)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이론과 실제

□ 2010~2017년까지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영아 836명[16]에 대한 생모의 출산은 병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중이 86.2%임.

- 이 연구에서 10대 미혼모는 병원 출산 비율이 90.3%인데 비해, 20대는 87.9%, 30대는 82.4%로 연령이 낮을수록 병원 출산 비율이 높아 '자신의 임신사실조차 알지 못하다가 집이나 화장실에서 급작스럽게 출산을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관념이 아닐 수 있음을 제시함.
- 그러나 출산 전까지 산전검사나 임신 중 필요한 정기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산모의 비중도 높음. 비록 의료기관을 통해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산모의 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 특성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위기 출산모의 사정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을 통한 지원체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간의 연계를 통한 예방 가능성에 대한 실효성 검토가 필요함.

〈표 8〉 베이비박스 영아 생모의 출산 장소 (2010-2017년)

단위: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병원	1	23	49	130	134	149	162	73	721
병원 외	1	2	1	25	20	20	31	15	115
합계	2	25	50	155	154	169	193	88	836

자료: 현소혜, 임정민, 안소영(2017) 아동유기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보건복지부, pp. 3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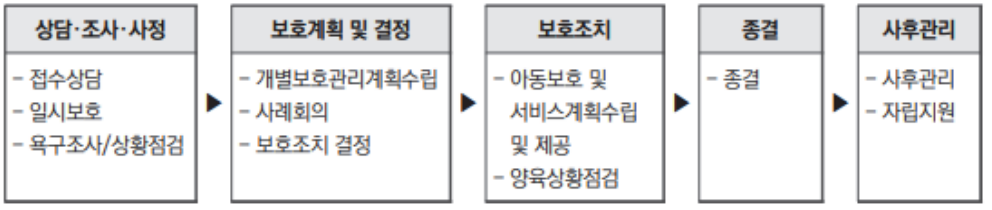
16) 현소혜, 임정민, 안소영(2017) 아동유기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보건복지부, pp. 33-34.

4 영아유기 대응 체계

1)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 아동보호서비스 체계는 크게 5단계인 1) 상담 · 조사 · 사정, 2) 보호계획의 수립 및 결정, 3) 보호조치, 4) 보호조치 변경 및 종결, 5) 사후관리로 구분됨 [그림 5]

[그림 5] 아동보호서비스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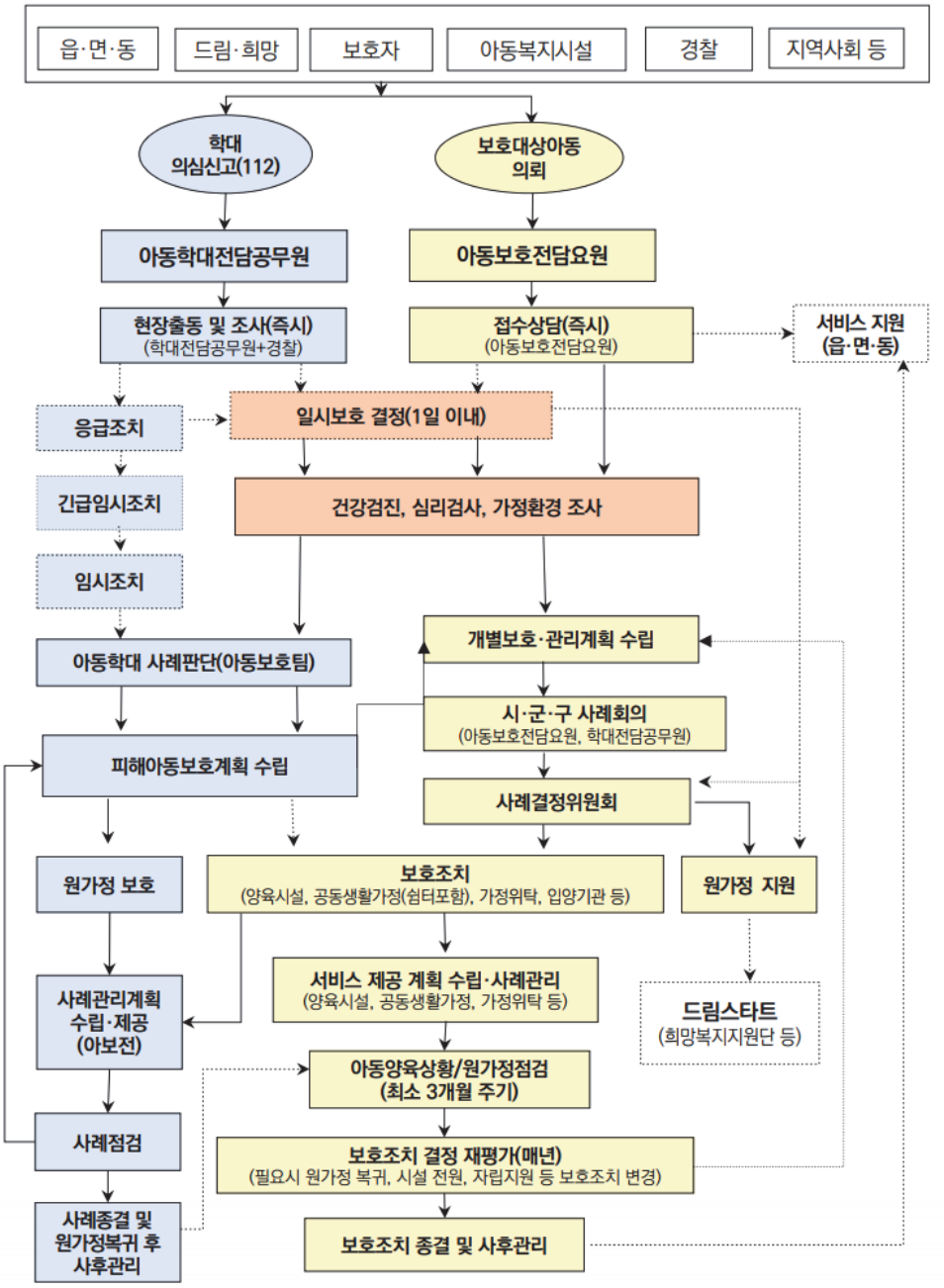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 16.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에 기초하여 사례 발생 시부터 종결 및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의 주체와 주요 역할을 아동보호 전담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중심으로 제시 [그림 6]

- 아동보호서비스는 학대여부와 보호대상 여부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아동, 아동보호전담요원은 보호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역할을 수행함.

[그림 6] 아동보호 전담인력별 주요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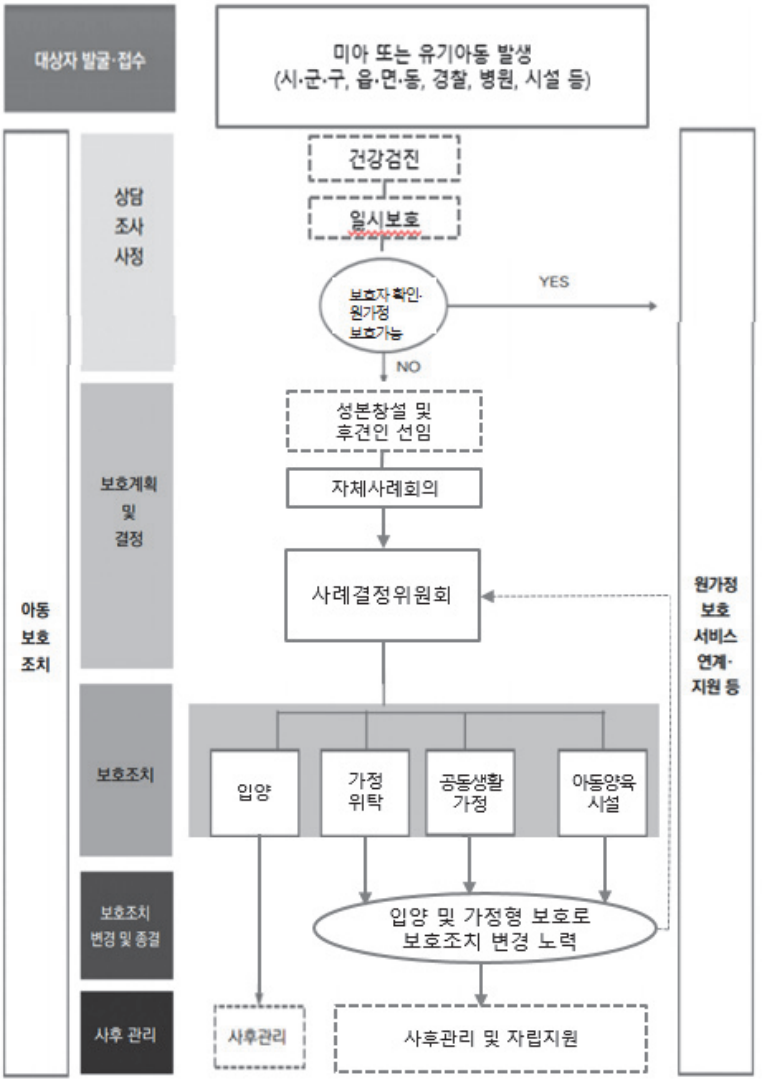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63.

2) 영아유기 대응 체계

□ 영아유기 사건의 경우, 유기 행위자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워 대체로 유기된 영아는 보호대상아동으로 의뢰되어 아동보호전담요원에 의해 서비스전달이 이루어짐[그림 7]

- 유기된 영아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성본 창설'의 절차를 밟게 되며, 장기보호 이전에 '일시보호'에 필요한 절차(건강검진 등)를 수행함.

[그림 7] 아동보호체계 내 영아유기 대응 체계 흐름도



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pp.24~28 & p.62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하였음.

3) 보호아동 통합정보 구축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및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현황 파악 및 운영개선의 필요성

- 아동복지법 제15조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17]

아동복지법 제15조의2(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입력 ②항의 각호

1.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 보유한 정보
2. 제15조,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보
3.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정보
4.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정보
5.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보
6.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가 보유한 정보
7.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
8.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가 보유한 정보
9.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아동에 관한 정보
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사회보장급여 중 아동 관련 정보
1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13. 아동학대행위자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아동학대관련범죄로 인한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복지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처리하는 민간단체 및 기관과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연계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단체와 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아동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대아동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는 원가정 보호와 보호조치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입양기관 등)로 구분하고 있으며, 유기 영아의 경우 원가정 보호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사례판정을 통해 장기보호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17) 아동복지법 제15조2: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설치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하 "아동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함.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관리·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나 관리가 개별 서비스 간, 지자체간 충분한 정보공유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아동중심의 서비스지원에 대한 통합적 정보수집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하여 개선된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예로, 통합적인 자료구축은 중앙과 지자체간 보호대상 아동이 지원받은 서비스를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아동중심의 자료 추적 및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통합적 자료 구축이 되어 일관성 있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통합적 시스템 운영 개선은 아동에 대한 현황 파악, 지원서비스 간 효율성 재고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등을 가능하게 하여 보호아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5 결론 및 제언

□ 아동 보호에 관련된 통계 자료가 가진 한계점 보완의 필요성

- 통계청의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통계가 전체 유기아동을 포괄하고 모집단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 지자체에서 보고 통계하는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집계 아동에 대한 다양한 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보의 양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연구진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면담 및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유기 행위에는 단일 요인보다는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

- 실제 양육이 어려운 개인 및 가정환경, 사회경제적 여건, 사회적 고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개인단위의 정확한 평가(사정)와 개별 사례에 맞는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영아유기의 예방적 접근은 의료기관 출산의 경우, 1차적 스크리닝을 통한 지원 연계를 강화시키는 방안

- 유기 영아 생모의 많은 비중이 의료기관을 통해 분만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료기관을 통한 위기 혹은 취약 임산부 발굴을 통해 해당자들에게 다양한 정책적 제도 및 지원이 연계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의료기관 유기는 자녀의 의료비에 따른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주요 요인이었으며,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회기금과의 연계가 필요함.

□ 보호조치 중 보호대상아동의 의료 정보 공유

- 입양과 관련해서 유기영아의 의료모니터링 보고는 입양대상가구와 매칭이 이루어진 이후에 사후적으로 공개(공유)하는 등의 대안적 방안도 검토 필요

□ 보호아동에 대한 통합적 자료 구축 및 네트워크의 필요성

-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매뉴얼을 통해 보호조치가 결정된 아동의 정보만 확보되며, 개별 아동에 대한 정보 추적은 제약이 있음.
- 통합적 자료 구축을 통해 아동중심의 추적 및 관리가 이루어져 정보 활용의 효율성 및 정책재원의 효과성을 재고하는 방안이 필요함.

참고문헌

〈보고서 및 서적〉

경찰청(2023), 내부자료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1). 2021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2022). 2022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보건복지부(2023), 2023년 보육사업안내, p.62.

사단법인비투비, 베이비박스 프로젝트 보고서

지제근(2004), 알기쉬운 의학용어 풀이집 제3판, 고려의학

현소혜, 임정민, 안소영(2017) 아동유기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연구, 보건복지부

〈웹자료〉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발견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5&conn_path=I2, 2023. 02. 28 인출.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10&conn_path=I3, 2023. 02. 28 인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제2호, https://www.law.go.kr/LSW/LsiJoLinkP.do?lsNm=%EC%98%81%EC%9C%A0%EC%95%84%EB%B3%B4%EC%9C%A1%EB%B2%95&paras=1&docType=JO&languageType=KO&joNo=000200000#. 2023. 06. 08 인출.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발견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5&conn_path=I2, 2023. 02. 28 인출.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시도별 신고접수 건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2&conn_path=I2, 2023. 02. 28 인출.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6&conn_path=I3, 2023. 02. 28 인출.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피해아동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06&conn_path=I3, 2023. 02. 28 인출.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10&conn_path=I3, 2023. 02. 28 인출.

보건복지부,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아동학대 사망사례 발생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64_A032&conn_path=I3, 2023. 02. 28 인출.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TX_117341138&conn_path=I3, 2023.4.30. 인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항진),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김미애의원 대표발의), 2021. 2,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Q0T1Z2W0O1T1U0S1X1A0V5N6J1H8. (2023.4.30. 인출) p. 9, 베이비박스 유기 비율은 보호대상아동현황보고를 기준으로 계산됨.

Session 2
토론

영아 유기:
의료적 접근을 통한 예방

이 승 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영아 유기: 의료적 접근을 통한 예방

이 승 미
서울대학교병원 교수

1 영아 유기 현황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출간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영아 유기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60-110건 사이로 집계되고 있음 [김자연 등, 2023].

〈표 1〉 유기 아동 현황 통계자료(2017-2022년)

단위: 건, 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유기아동(보호대상아동)	261	320	237	172	117	-
베이비박스 유기(보호대상아동)	167	171	130	-	-	-
베이비박스 유기(베이비박스)						
계	92	-	-	-	-	-
0-3일	26	-	-	-	-	-
4-10일	40	-	-	-	-	-
11-30일	16	-	-	-	-	-
31-100일	5	-	-	-	-	-
100일-6일	3	-	-	-	-	-
6월-1년	2	-	-	-	-	-
1년 이상	0	-	-	-	-	-
영아유기 발생 건수(경찰청)	-	-	-	107	76	64

영아유기는 출생 직후 혹은 신생아시기에 주로 발생하며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발생되는 빈도가 높음. 특히 발견당시 사망으로 발견된 사례가 가장 많으며, 발견 장소로는 자택, 공용화장실, 종료시설 순으로 확인됨. 따라서 출생 직후와 신생아 시기 (생후 1개월 이내)가 영아유기의 가장 취약한 시기인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시스템의 개선이 요구됨

2 출생 신고 제도

현재 출생 신고 제도는 출생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서 (그림 1)를 작성하고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 증명서 (그림 2)를 첨부하여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 하여야 하며, 2018년에 전자문서로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설됨.

[그림 1] 출생신고서



[양식 제1호] (앞면)

출 생 신 고 서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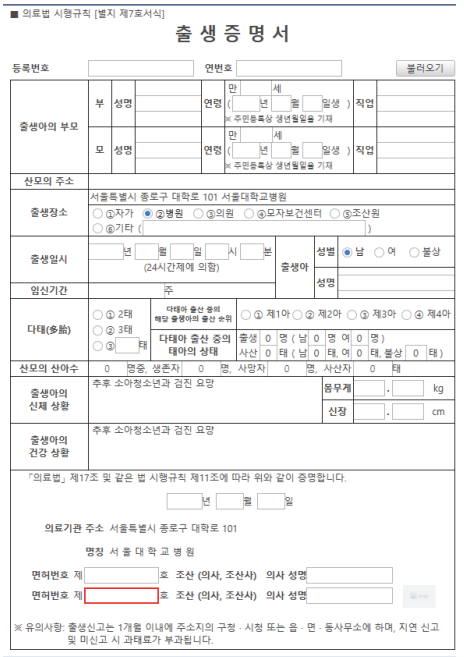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O"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출생자	성명	한글 한자		본 (한자)	성별	[1] 남 [2] 여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한국시각 : 24시각제)				
	출생장소	[1] 자택 [2] 병원 [3] 기타				
	입적할 가(家)	본적				
		호주	(한자 :)		호주와의관계	
	주소				세대주및관계	외
② 부모	부	성명	(한자 :)		본 (한 자)	
	모	성명	(한자 :)		본 (한 자)	
	본적					
③ 기타사항						
④ 신고인	성명		⑩ (서명 또는 무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1] 부 [2] 모 [3] 호주 [4] 동거친족 [5] 기타 (의 자격 :)				
	주소					
	전화	(H.P :)	이메일			

※ 다음은 통계법 제13조에 의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고 또한 국가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수집이 목적이므로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출생자 부(父)에 관한 사항	출생자 모(母)에 관한 사항
⑤ 실제생년월일	년 월 일	년 월 일
⑥ 직 업		
⑦ 최종졸업학교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 이상	[1] 무학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대학 이상
⑧ 실제결혼연월일	년 월 일부터 동거	⑨ 임신주(週)수 임신 만 주
⑪ 다태아(쌍둥이) 여 부	[1] 단태아 [2] 쌍태아(쌍둥이) [3] 삼태아(세쌍둥이) 이상	⑫ 출생순위 [1] 첫째 아이 [2] 둘째 아이 [3] 셋째 아이(번째 아이)
⑩ 신생아 체 중	. kg	
⑬ 모의 출산수	이 아이까지 총 명을 출산하여 명 생존(명 사망)	

[그림 2] 출생 증명서



■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출 생 증 명 서

등록번호 연번호 불러오기

출생아의 부모	부	성명	연령	만 세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직업	
	모	성명	연령	만 세 (년 월 일생)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재	직업	
산모의 주소						
출생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서울대학교병원					
	○ ①자가 ● ②병원 ○ ③의원 ○ ④모자보건센터 ○ ⑤조산원 ○ ⑥기타 ( )					
출생일시	년 월 일 시 분 (24시간제에 의함)		출생아	성별	● 남 ○ 여 ○ 불상	
				성명		
임신기간	주					
다태(多胎)	○ ① 2태 ○ ② 3태 ○ ③ 태	다태아 출산 중의 해당 출생아의 출산 순위	○ ① 제1아 ○ ② 제2아 ○ ③ 제3아 ○ ④ 제4아			
		다태아 출산 중의 태아의 상태	출생 0 명 (남 0 명 여 0 명) 사산 0 태 (남 0 태 여 0 태 불상 0 태)			
산모의 산아수	0 명중, 생존자 0 명, 사망자 0 명, 사산자 0 태					
출생아의 신체 상황	주후 소아청소년과 검진 요망			몸무게 . kg		
				신장 . cm		
출생아의 건강 상황	주후 소아청소년과 검진 요망					

「의료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

명칭 서 울 대 학 교 병 원

면허번호 제 호 조산 (의사, 조산사) 의사 성명

면허번호 제 호 조산 (의사, 조산사) 의사 성명

※ 유의사항: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주소지의 구청 · 시청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에 하며, 지연 신고 및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는 병원에서 출생 정보를 전자적으로 심평원을 거쳐 대법원 시스템에 송부하고 이후 부모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출생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병원에서 제출한 정보와 출생신고서를 대조하여 출생 신고가 완료되는 제도임.

2019년 기준으로 107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166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참여하고 있지 않은 병원도 많아 참여율이 낮은 상황임.

3 영아 유기 예방: 온라인 출생 신고 제도 활성화를 통한 출생 신생아 등록의 자동화

분만병원의 대부분이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온라인 출생신고 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병원에서 출생 정보를 바로 대법원으로 송부하므로 출생한 신생아에 대한 정보가 저절로 생성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음.

아울러 분만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정보가 저절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부모에 의한 영아 유기를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참고문헌

김자연, 박은정, 최윤경, 차선자, 윤수경 (2023), 영아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영아 유기를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NOTE

Session 2
토론

‘영아유기 실태 및 과제’ 토론문

한 은 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영아유기 실태 및 과제’ 토론문

한 은 희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연구위원

영아 유기 실태 파악

먼저 통계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자가 지적하였듯이 현재 통계청의 보호대상아동 현황 통계는 지자체로부터 취합된 보고 통계로 추정되며, 전체 유기아동을 포괄하는 모집단 자료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보호아동에 대한 통합DB 구축을 통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유기 아동 발생 현황 및 보호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복e음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을 연계하여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은 지연되었고, 2022년 2차 개통이후에는 여러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오류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아동통합정보시템은 2023년 말 예정이었던 3차 개통까지 구축될 예정이었으나, 현재로서는 3차 개통이 불가능 하거나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자체가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번 기회에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의 목적과 설계부터 다시 점검하여 실효성이 높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에서 2000년 친족의 학대로 인해 당시 8세 였던 Victorial Climbi가 사망하였다. 영국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심층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클림비가 사망하기 전에 구할 수 있었던 12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기관간의 정보 공유가 안 되어 그 기회들을 놓쳤다고 진단하였다. 이에 영국 정부는 아동 관련 모든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 관리하는 허브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대책을 발표였다. 그리고 실제로 2004년 아동 정보 연계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총 구축비 £224 million을 투입하여 2009년 가을 Contact Point를 개통하였다. Contact Point 영국 내 모든 아동(0-17세)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부모에 관한 정보, 아동과 관련된 서비스 제공자 연락처(의사, 학교, 유치원

등), 주 사례관리자가 누구인지, 표준사정도구(Common Assessment Framework)를 통한 사정실시 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의 사용자는 150개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종사자들로 최소 330,000 명으로 추정되었다. Contact Point는 사회복지사, 공무원, 의사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자들이 서비스 대상 아동에 대하여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이 관여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여러 주체가 효과적으로 조기 개입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개통 후 1년이 채 안되어 폐지가 결정되었다. 모든 아동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은 부당하고 부적절하다는 윤리적 이유가 가장 컸고, 정보 자체의 품질이 낮고 신뢰성이 낮아 시스템의 실효성이 낮은 이유도 있었다. 이후 영국 정부는 모든 아동의 정보를 연계하는 거대 시스템을 사용하는 대신 아동보호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만을 연계하여 공유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영국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이 무엇을 하기 위한 시스템인지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누가 사용하기 위한 시스템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연계해야 할 것이다. 각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한다거나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정보를 연계한다는 것은 오히려 정보의 품질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결국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불필요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동보호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동학대로 판정된 아동 중 몇 명이 유기된 아동이며, 이중 몇 명이 시설보호되고, 몇 명이 입양되고, 몇 명이 원가족으로 복귀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시설입소 아동에 대한 연령별 입소 사유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통계를 생산하는데 몇 천억원을 들어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시스템에 있는 정보들을 연계하면 얻을 수 있는 통계인지에 대한 검토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아동학대 신고 접수 및 조사, 사례판정 업무는 시군구 공무원이 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정보는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복e음 내의 아동학대 업무 탭에 입력되어 관리된다. 아동학대의 유형은 크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그리고 방임으로 분류되며, 방임의 하위 유형이 물리적 방임, 의료적 방임, 교육적 방임, 가출 아동 찾지 않음, 출생신고 하지 않음, 그리고 유기로 구분되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아동학대 공식통계에는 네 가지 학대유형 통계는 집계되고 있으나, 방임의 하위유형은 집계되고 있지 않다. 통계가 집계되지 않을 뿐,

유기 정보는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을 수 있다. 대부분의 유기아동은 보호대상 아동으로 의뢰되어 아동보호전담 요원에 의해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담 요원이 쓰고 있는 정보시스템에 시설 입소 사유 혹은 보호대상 아동인 된 사유에는 유기가 항목이 있을 수 있다. 통계 및 연구 목적으로 각 시스템에 축적된 정보를 결합하여 통합 데이터 셋을 구축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많은 아동 정보들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서 이종 사업간 정보를 결합하여 분석하고 통계를 생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과제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해서는 출생 이전, 즉 임신 순간부터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에서는 임신바우처(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을 병원비와 진료비, 치료, 약재 구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보건소를 통해 엽산제, 영양플러스, 철분제 등 다양한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산부들에게 이러한 지원과 서비스를 지원할 때 복지멤버쉽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을 연계하여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영아 유기 및 학대를 예방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은 임산부 및 만 2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건소 소속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영유아 및 산모의 건강관리, 양유에 대한 교육,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여 모자 애착을 강화 및 양육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현재는 시범 운영 중이지만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지금은 원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사업이지만, 생애초기 방분 건강관리가 모든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의무화 된다면 영유아 유기 및 학대 방지 및 조기발견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NOTE

2023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아동 권리 보장과 학대 예방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